

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

I. 개 요

1. 일시: 2014. 9. 30. (16:00~18:00)
2. 장소: 8층 회의실
3. 발표자: 강성진 변호사(World Trade Advisors)
4. 참석자

김종덕(KIEP, 부연구위원)
강준구(KIEP, 전문연구원)
박혜리(KIEP, 전문연구원)
이주미(KIEP, 연구원)
엄준현(KIEP, 연구원)
고준성(산업연구원, 선임연구위원)
성한경(서울시립대학교, 교수)

5. 제목

– 서비스 무역 관련 양자/다자협정 정부조달 관련 조항 비교 및 분석

II. 주요 논의 사항

1) 발제내용

☐ 정부조달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 13%를 차지함. 이는 OECD 국가 전체 정부 소비 규모의 30% 정도임(2011년 기준).

☐ 정부조달에서 서비스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설서비스를 비롯해

상당한 것으로 추정됨.

- GATS 13조에 따르면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용역 공급 목적이 아닌 정부 사용 목적으로 정부 기관이 구매하는 서비스의 경우 GATS 2조(최혜국 대우), 16조(시장접근), 17조(내국민대우) 적용이 배제됨.
 - 동일 취지의 조항이 복수국간서비스협정(TiSA)의 core text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음.
- WTO 정부조달협정(GPA)은 가입국간에만 유효한 복수국간협정으로 1994년 타결, 1996년 발효되어 총 42개국(EU 28개국 포함)이 가입하고 있음.
 - 회원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, 규정, 입찰 절차, 관행에 대해 적용됨.
 - 협정상의 일반 원칙은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원칙(제3조), 원산지규정(제4조), 대응구매(제16조)임.
 - 입찰방식은 일반공개입찰, 지명경쟁입찰, 수의계약에 따르며, 입찰시 공급자의 재정적, 기술적, 상업적 능력을 고려하기도 함.
 - 한국은 GPA 가입국으로 중앙정부의 경우 130,000 SDR 이상의 상품·서비스 공급 계약 및 5,000,000 SDR 이상의 건설서비스 공급 계약에 대해 양허함.
 - 미국은 인천공항 건설 당시 한국의 승강기 입찰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, 1999년 인천공항공사는 GPA Annex1의 양허 대상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이 승소하는 사건이 있었음.
- 2014년 GPA가 개정되어 총 37개국(EU 28개국 포함)이 참여하고

있음. 한국은 개정된 GPA에는 가입하지 않았음.

- 회원국은 미국, EU, 캐나다, 노르웨이, 이스라엘, 싱가포르, 리히텐슈타인, 대만, 홍콩, 아이슬란드임.
- 개정된 GPA에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음.
- 개정 GPA는 적용 범위를 상품과 서비스를 불문하고 회원국이 양허한 기관들이 수행하는 상업적 판매나 상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각종 계약 수단을 통한 조달로 정의함.
- 개정 GPA의 일반원칙은 비차별 원칙, 전자입찰 관련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 및 범용성 보장, 입찰절차의 투명성 및 이해 충돌 방지, 정부조달 관련 일반 수입과 상이한 원산지 규정 적용 금지, 대응구매 금지 등임.
- 개정 GPA는 부동산 매매·임차, 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 및 비계약적 동의(non-contractual agreement), 재정·금융·신탁기관 등의 정부 부채 판매·변제·유통 등의 각종 거래, 공무원 고용 계약, 개발 원조 및 국방 목적을 위한 조달 계약 등을 예외 항목으로 두고 있음.
- 개정 GPA에서는 개도국 참여를 위해 가격특혜나 대응구매와 같은 과도적 조치를 두기도 하였는데, 최빈개도국의 경우 국가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음.
- 기존 GPA의 3가지 입찰방식과 더불어 전자 경매를 통한 조달 방식이 추가되었음.
- 분쟁해결은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(DSU)를 따르며, 패널 중 정부조달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기존 요건이 개정 GPA에서는 삭제됨.

□ 한·EU FTA에서 정부조달은 1994년 타결된 GPA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- 민자사업의 경우 1,500만 SDR 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개방하고 있음. 한국은 BOT(Build-Operate-Transfer) 방식 계약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, EU는 민자 참여 공공 건설 계약(Public Works Contract)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.
- 최혜국 대우, 개도국 특별대우, 입찰참여 조건, 기존 GPA의 21조 및 22조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, 정부조달 절차에 개정 GPA를 전면 적용하였음.

□ 한·미 FTA의 경우, 정부조달 상품·서비스 양허의 하한선이 인하여 양허 대상이 늘어났음. 적용 대상은 미국 연방 정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음.

- 정부조달의 주요 내용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시 과거 조달 실적 조건 철폐, 전자적 수단에 의한 조달 수행 시 관련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및 범용성 보장, 기술 규격(technical specification) 설정 허용, 기존 GPA 주요 규정 준용 등임.
- GPA가 개정되거나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협의 후에 GPA 장을 개정 가능하도록 함.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참여 보장 규정은 예외임.

□ 시사점

- GATS와 TiSA 모두 정부 구매 목적이 아닌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는 GP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.
- 한국은 아직 개정 GPA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한·미 FTA와 한·EU

FTA를 통해 사실상 개정된 GPA 체제에 편입된 것과 마찬가지로.

- 개정 GPA에 정식 가입하게 된다면, 한·미 FTA 수준으로 계약 금액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 보임.
- GPA에서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의 서비스 계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.
- TPP정부 조달에서도 개정 GPA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.
- 협상 상대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양허 폭을 조절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겠음.

2) 토론 내용

- ☐ 개정된 GPA는 전자조달 방식을 입찰방식으로 추가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.
- ☐ TiSA에서 정부조달에 대해 일부 논의하고 있으나, 개정된 GPA와 달리 최빈개도국에 대한 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.
- ☐ 계약 체결 후, 외국인의 인력이동에 관한 문제는 GATS의 문제임. GPA는 입찰참여의 기회를 개방하느냐 개방하지 않느냐와 같은 계약 자유화 여부에 대한 문제임.
- ☐ 공기업의 범위 설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.
 - 중국의 경우 거의 모든 기업이 국영기업(SOE)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, 외형상 기업으로 보이나 실제로 정부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(government-linked company)들이 많음.
 - 형식적 민영화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인 기준과 객관

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- ☐ 지자체 포함 여부 관련, 한국은 광역단체(시, 도)까지만 포함하는데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.
- ☐ government procurement와 public procurement 간 의미는 큰 차이가 없음. public procurement의 경우 주로 EU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는 하나, 양허에서 용어에 대해 정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음.